

1. 개정이유

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내용 등으로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575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됨에 따라 공개 수색·수사 체계 및 절차,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실종경보·유괴경보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선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실종경보·유괴경보 발령 주체·요건 등 정비(안 제4조의5)

- 1) 실종경보·유괴경보를 발령·해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시·도경찰청장까지로 확대
- 2) 실종아동등의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실종경보 발령 요건으로 추가
- 3) 실종경보·유괴경보 발령 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 명시
- 4)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실종경보·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

나.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,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마련(안 제4조의6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”으로, “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”를 “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(이하 “필요한 정보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없는”을 “없고,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의5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경찰청장”을 각각 “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5 제3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종정보 또는 유괴정보를 발령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요청
2. 실종·유괴정보에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시·송출 요청

3. 그 밖에 효과적인 매체·수단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전파 또는 그 요청

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
2. 실종·유괴의 경위
3.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
4.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및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4조의6을 제4조의7로 하고,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6(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) ①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”란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업무 중 이동전화 업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

2.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) 매출액
이 10억원 이상인 자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5(실종경보·유괴경보 등) ① (생 략)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·수사가 필요하고,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1. 실종경보: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. (생 략) <신 설>	제4조의5(실종경보·유괴경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----- -----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(이하 “필요한 정보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 없고,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 ③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⑤ 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

1.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요청

2. 실종·유괴경보에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시·송출 요청

3. 그 밖에 효과적인 매체·수단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전파 또는 그 요청

④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-----

-----,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-----
-----.

⑤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-----

-----, -----

-----.

<삭 제>

전기통신사업자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,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

2. 실종·유괴의 경위

3.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

4.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

<신 설>

<신 설>

할 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

2. 실종·유괴의 경위

3.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

4.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및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4조의6(주요 전기통신사업자

등) ①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”란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의무 중 이동전화 의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의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<u>제4조의6</u> (생략)	<u>를 말한다.</u> 1. <u>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</u> <u>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</u> <u>이상인 자</u> 2. <u>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</u> <u>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</u> <u>도)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</u> <u>자</u> <u>제4조의7</u> (현행 제4조의6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